

아르바이트 (일용) 미근로 사실 확인서

이 름: 신청인과의 관계:

생년월일:

연 락 처:

1. 마지막으로 일용근로 한 날짜 및 사업장명(근무지/현장명)

- 날짜:

- 사업장명:

2. 상기 본인은 위의 마지막 근무 후 현재까지 일용근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※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,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참여 유형이 결정되며, 가구단위 기준 60% 미만(단, 34세 이하의 청년층일 경우 기준 120% 미만)일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 참여 가능합니다.

해당 소득 관련 확인서 및 제출 서류(최근 3개월 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내역 등)에 거짓된 사실이 있을 경우,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
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한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 및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모든 수당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금액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감액지급 되거나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며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 됨

※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, 5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

2026. . .

이름: (서명)

신청인 이름: (서명)